

중소기업 *focus*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하도급법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1

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부과 기준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5. 6. 15. ~ 2015. 7. 27.(40일간) 입법예고 하였음
-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임.
 - 6개월 기간동안 소규모·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신고 포상금 운용 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 다만, 서면 실태조사를 사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함.
-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 개정 내용을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2

둘.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중견기업도 하도급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 중단 등의 보복 행위도 금지됨
- 하도급법에는 거래대금 지급에 한정해서 중견기업 중에서 연매출 3000억이하의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할 때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받는 것을 법안에 명시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상시 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함(제2조 제2항 제2호)
 어음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율 고시 제도를 폐지(제13조 제10항)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제13조 제11항)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거래 중단 보복하는 행위의 금지(제19조 제3호)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처분시효를 신설(제22조 제4항)
 신고 포상금제도의 도입(제22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의 자율화(제24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

- **중견기업간 거래의 경우는 중견기업의 지정요건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시행령에 위임**
 - 당초 법안소위 의결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거래는 법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최종 법조문 작성과정에서 합의

■ **개정안 주요세부내용 및 관련법률**

-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상시 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제2조 제2항 제2호)**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 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많더라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 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원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었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편됨(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련법률 : 정의(제2조 제2항 제2호)
<p>현행법률 조항</p> <p>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p>
<p>개정법률 조항</p> <p>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_____ 연간매출액 _____</p>

☞ (사례) 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50명인 기업(A)이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49명인 기업(B)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후자(B)가 거래상 더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종전 법령에 따르면 A사가 B사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로서 의무는 B사가 아닌 A사가 부담

-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율 고시 제도의 폐지 및 개선(제13조 제10항)**
 -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규정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 제10항) : 폐지 및 개선
<p>현행법률</p> <p>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개정법률 조항</p> <p>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p>

- 어음 대체 결제 수단 : 기업 구매 전용카드,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
-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고시하기 보다는 실제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제13조 제11항)**

-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로 보호
- 하도급법은 1985년 법 시행 이후 수급 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 제11항) : 신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여 90 ~ 120일 기한의 어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될 경우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됨.
-------------	---

☞ 적용예시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하며, 2013년 말 현재 총 3,846개가 있음(중소기업청)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이 수급 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3,302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86% 임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금액을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데 만기일(상환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중견기업은 원사업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

●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거래 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의 금지(제19조 제3호)**

법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제3호) : 신설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실태조사와 관련,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위반 시 3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

●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처분시효(제22조 제4항)**

- 공정위가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 현행 규정상 공정위가 일단 조사를 개시하면 기간 제한없이 처분을 할 수 있어서 신고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고, 피조사인도 장기간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음.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 22조 제4항) : 신설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부터 3년</p> <p>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 조사개시일부부터 3년</p>

● **신고 포상금 제도의 도입(제22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적용 대상 위반행위 유형 : 4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 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행위 유형에 한정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신설 (⑤~⑧까지)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p> <p>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p> <p>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p> <p>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의 자율화(제24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

-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업자 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 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 현행 하도급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그러한 단체로 10개 사업단체를 규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 신설
<p>②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p>

◆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윤종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홈페이지 www.gsbc.or.kr
 자료문의 평가조사실
 031-259-7365

「중소기업 포커스」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